신내역 힐데스하임 참좋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6.0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의 청약 접수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접수는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하나, 현장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청약 가능 시간(아파트투유 www.apt2you.com 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 시간(견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청약 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부적격 시 당첨자 선정 제한1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중랑구)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2018.12.31.이후)으로서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 인천(일부) · 경기도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일부)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투기지역 :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동작, 종로, 동대문, 중구(15개구) ·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광명시 · 하남시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광명시 · 구리시 · 안양시 동안구 · 화성시(동탄2에 한함) · 광교택지 개발지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 기흥구 · 부산 해운대구 · 동래구 · 수영구 – 전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에서 해당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19.〉
1.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4)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2018.06.0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 · 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민영주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05.)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1년 이상(2018.06.05. 이전부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 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 당첨 · 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 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전용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제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무주택 선정 시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청약시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

▣ 2017년 9월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가점제 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또한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 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1항 및 제26조2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특별공급은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 예비입주자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일반공급은 가점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됩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양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위 공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정하는 해당 분양 주택의 임의 공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령 위반에 해당됨.

▣ 2018년 5월 4일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년 5월 4일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 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와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 · 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의 입주자 발표일은 일반공급 입주자 당첨발표일과 같은 날 동 · 호수를 포함하여 발표되며,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565호 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 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등으로 보지 아니함.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서울시 중랑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서비스가 2018년 5월 28일부터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당해 (서울 1년이상 거주)	1순위 기타 (서울 1년미만/경기/인천)	2순위 (서울/경기/인천)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6월 10일(월)	6월 11일(화)	6월 12일(수)	6월 13일(목)	6월 19일(수)	7월 1일(월) ~ 7월 3일(수)
방법	인터넷청약 (08:00~17:30)	인터넷청약 (08:00~17:30)	인터넷청약 (08:00~17:30)	인터넷청약 (08:00~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장소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서울 강북구 도봉로 82 신내역 힐데스하임참좋은 견본주택 (10:00~16:00)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2018.05.28.부터 스마트폰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1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주택과 – 14392호(2019.06.05.)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우편번호 02057)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공공주택지구 C1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지상25층 3개동, 총 218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3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6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1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타입(약식표기)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배정세대(신청가능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계		
민영주택	2019000468	01	84A	84.8456	23.7038	108.5494	64.7968	173.3462	53.6931	179	18	18	35	5	76	103	2
		02	84B	84.9309	24.0221	108.9530	64.8620	173.8150	53.8383	39	4	4	8	1	17	22	1
합 계										218	22	22	43	6	93	125	3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시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차 (2019.10.21)	2차 (2020.02.24)	3차 (2020.06.22)	4차 (2020.10.19)	5차 (2021.02.15)	6차 (2021.06.14)	잔금(30%): 입주지정일
84.8456	84A	179	1층	2	250,515,155	266,484,845	517,0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2층	8	250,515,155	277,484,845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3층	8	250,515,155	283,484,845	534,0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4층	8	250,515,155	288,484,845	539,0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5~9층	40	250,515,155	293,484,845	544,0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10~19층	76	250,515,155	299,484,845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20층이상	37	250,515,155	304,484,845	555,0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84.9309	84B	39	1층	1	251,192,613	257,807,387	509,0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2층	2	251,192,613	269,807,387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56,300,000
			3층	2	251,192,613	274,807,387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4층	2	251,192,613	279,807,387	531,0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59,300,000
			5~9층	10	251,192,613	285,807,387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10~19층	20	251,192,613	290,807,387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20층이상	2	251,192,613	295,807,387	547,0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는 전 세대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형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음.(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안목치수 기준임.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의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음.[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선납 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 할인율은 공급 계약서 참고 요망) •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27호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84A	84B	합 계
이주자	2	–	2
철거민	2	–	2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공급유형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민영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신혼(배우자 소득 없음)	100% 이하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신혼(배우자 소득 있음)	120% 이하	6,482,177	7,398,242	8,039,838	8,818,669	9,597,500	10,376,332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신혼(배우자 소득 없음)	100%초과 ~ 120%이하	5,401,815 ~6,482,177	6,165,203 ~7,398,242	6,699,866 ~8,039,838	7,348,892 ~8,818,669	7,997,918 ~9,597,500	8,646,944 ~10,376,332
		신혼(배우자 소득 있음)	120%초과 ~ 130%이하	6,482,178 ~7,022,358	7,398,243 ~8,014,763	8,039,839 ~8,709,825	8,818,670 ~9,553,558	9,597,501 ~10,397,292	10,376,333 ~11,241,026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해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 · 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대원의 배우자도 특별공급 청약자격 부여(안 제2조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세대원의 배우자를 세대원에 포함하여 청약자격 부여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85㎡이하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1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행일 이전(시행일 2018.12.11)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 함. 이외 주택소유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동일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제58조 제3항에 의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다 무효처리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단, 신청자 / 배우자 /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단, 시행일 이전(시행일 2018.12.11.)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 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기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처리를 준용함.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인터넷, ARS, 휴대전화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금융결제원 (全 은행 청약자)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06.19. (수) ~ 2019.06.28. (금) (10일간)	
인터넷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청약조회→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당첨조회→당첨조회(최근10일)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KB부동산→주택청약→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전체메뉴 – 조회」→「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완료」
전화 (ARS)		서비스 종료	전화 1588–9999 (서비스코드 9→1→3)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9.06.19.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KB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KB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06.15.부로 종료되었으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임.

6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 · 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07.01.(월) ~ 2019.07.03.(수) 3일간, 10:00~16:00	신내역 힐데스하임참좋은 견본주택(서울 강북구 도봉로 82)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20세대 미만 일시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잔여세대 20세대 이상일시 무순위 사후접수 진행)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조
  - 입주자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사유없이 일정기간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제58조 제3항에 의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내 시설명칭, 동 · 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3항에 해당하는 자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간주.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 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산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산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의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취소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비 고
공통 기본서류 (특별공급 포함)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에 절대 불가함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84A	12,372,000	1,000,000	3,000,000	3,000,000	5,372,000
84B	10,898,000	1,000,000	3,000,000	3,000,000	3,898,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수협은행	1010–1640–6654	주택도시보증공사PF금융1센터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 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상기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 지정된 확장공사 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급, 동가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 옆세대 비확장 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 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수전,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또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바닥난방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확장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문의 바람.
-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발코니에는 일부 천장 마감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의 바닥배수구에 따른 천장마감 길이는 연장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가구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타입(주택형)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일
놀테 주방가구	전 주택형	놀테(독일산)	13,500,000	10%	90%
주방 장식장		국산	1,800,000		
현관 장식장		국산	700,000		

※ 추가 선택품목은 선택 옵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납부조건 및 납부일정 등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가구의 설치 모양 또는 설치위치는 각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타입(주택형)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일
빌트인 냉장고1(BRS655140SR)	전 주택형	삼성	6,800,000	10%	90%
빌트인 냉장고2(BRS665040SR)		삼성	5,7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R01EC)		삼성	1,800,000		
인덕션(NZ63N5300CK)		삼성	950,000		

※ 추가 선택품목은 선택 옵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납부조건 및 납부일정 등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귀, 품절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타입(주택형)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일
수입원목마루(조르다노)	전 주택형	조르다노(이탈리아산)	12,500,000	10%	90%
현관 중문		지아르케	900,000		
침실 유리월 + 도어		지아르케	3,000,000		

※ 추가 선택품목은 선택 옵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납부조건 및 납부일정 등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설치 모양 또는 위치는 각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에어컨 선택품목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설치 모델명(제조사 : 삼성전자): 실외기		실내기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옵션1(2대)	거실, 침실1	1대	AJ030MXHNBC1	1대	AJ072MB1DBC1	3,300,000	10%	90%
					1대	AJ032MB1DBC1			
	옵션2(3대)	옵션1 + 침실3	1대	AJ040MXHNBC1	1대	AJ072MB1DBC1	4,500,000		
					1대	AJ032MB1DBC1			
					1대	AJ020MB1DBC1			
	옵션3(4대)	옵션1 + 침실2, 3	1대	AJ050MXHNBC1	1대	AJ072MB1DBC1	6,000,000		
					1대	AJ032MB1DBC1			
					2대	AJ020MB1DBC1			

※ 추가 선택품목은 선택 옵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납부조건 및 납부일정 등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천장형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천장형 에어컨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천장형 에어컨 공사비는 천장형 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천장형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확장 / 비확장에 따라 천장형 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장형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천장형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천장형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냉매배관은 총 2개소(안방, 거실)에 설치됨. ※ 에어컨 개별시공시,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수의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천장형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수협은행	1010–1640–6654	주택도시보증공사PF금융1센터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입주자모집 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하며, 제안된 사항 외의 위치별, 실별 선택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은 해당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 중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 사항 (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①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시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②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③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④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 · 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 · 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사용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계약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착공 후 구조설계관련 도서의 내용은 불합리한 설계나 표기의 오류, 오기, 현장여건(평판재하시험), 측량결과, 성능개선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준공도서, 공사 시방서(사용승인), 견본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순으로 정합니다.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이하 명시한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내 · 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서울 양원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 · 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하천,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주택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서울 양원공공주택지구 여건상 단지 북측에 도시철도 기본계획노선(면목선)과 면목선차량기지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기지 특성상 24시간 열차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해서 서울시(서울교통공사 포함), 시행사, 시공사에 어떠한 민원 및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서울 양원공공주택지구 C1BL은 도시가스 공급예정입니다. • 본 단지 북측의 소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공범위로 택지개발 준공시점의 현장주변여건 (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단지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조경석쌓기 포함), 법면처리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산책로의 형태, 재질, 범위, 디자인, 색상, 설치여부 등은 가정하여 제작되었으므로 단지모형과 실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CG 및 단지모형에 작성된 소공원, 초등학교, 공지 계획 등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면 소공원과 연계되는 계단 및 램프는 택지개발 준공시점의 현장주변 여건에 따라, 설치되지 않거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울 양원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지 동측의 공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범위로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바닥포장의 패턴, 범위, 재질, 디자인, 색상, 가로수 설치, 시설물 등의 계획은 가정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실제시공과 다르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택지개발지구 동측 외곽에는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연면적 9,154.1㎡)가 위치하고 있어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운반 차량이 통과(1일 통행횟수 526회)되고 악취가 발생되며, 재활용품 선별, 생활쓰레기 압축, 대형생활폐기물 파쇄, 스티로폼 감용 등 행위가 일어남에 따라 본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필히 현장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현황

명 칭 :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소재지 :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 면 적 : 부지면적 4,950㎡, 건축 9154.1㎡(지상1층, 지하2층)
역 할 : 재활용품 선별, 생활쓰레기 압축, 대형생활폐기물 파쇄, 스티로폼 감용 등 기 타 :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등 적재 차량 수시 출입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근린공원, 소공원, 공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인 동측:포천세종고속도로(폭24m,예정), 북측: 북부간선도로(폭23~26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단지출입구에는 신호등 설치계획이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동측 근린공원 내 저류지 설치계획이 있으며, 학교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종교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 · 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본 사업부지 외부의 소공원, 공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계획(안)을 구현한 것으로 개발사업자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관할로 변경 될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함.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은 없음. • 당해 지구 내 종교시설, 저류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입주민의 초 · 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설립이 확정될 시 신설예정 초등학교(2022년 3월 개교로 추진예정)로 배치될 예정이나 미개교시 인근학교(동원초, 신내초)로 분산 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2021년 입주시기 기준 중학군 · 구 고시에 해당하는 중학군에 배정될 계획임 • 학교예정부지 내 학교설립 확정여부와 개교시기는 관련 법령 및 규칙에 의거 설립 제반 절차(학교설립계획심의, 재정투자심사 등)를 통해 최종 확정됨. 양원공공주택지구 내 각종 교육시설 예정부지는 설립이 미확정된 사안으로 개발 사업 시행자의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학교설립제반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이 취소 · 보류 · 지연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입주민의 초 · 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설립이 확정될 시 신설예정 초등학교(2022년 3월 개교로 추진예정), 중학교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 현황을 반영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기존 3학군(동원중, 송곡여중, 영란여중)에 배치 가능하며, 2021년 입주시기 기준 중학군 · 구 고시에 해당하는 중학군에 조정되어 배정될 계획임.
-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예정부지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설립 제반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나 추후 학교설립계획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설립확정여부, 개교 예정시기 등이 변동되므로 해당 예정부지의 학교 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2021년 08월 예정이며, 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될 시 개교예정일은 2022년 3월인 바 신설학교 개교 이전 전학이 불가하므로 학생의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입주일자를 계획하시기 바람.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는 동부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양원지구 지역 중학교 배정은 추첨에 의하여 교육장이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학교에 교통편을 참작하여 배정함.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 · 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지, 소공원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 ·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서울 양원공공주택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익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익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 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 ·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 호수별 최고층수(101동 – 1~2호 : 25층 / 102동 – 1호 : 15층, 2호 : 20층, 3~4호 : 25층 / 103동 – 1~2호 : 20층, 3~4호 : 25층)는 상이하며 입주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 · 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 단지 주출입구가 위치하며 도로의 차량통행과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인접으로 인해 소음 및 생활환경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과 동측으로 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환기와 채광을 위한 환기구, 채광창 구조물 및 소방재연 관련 구조물 등이 일부 동의 전 · 후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 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